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기록물의 역할과 기능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Function of Archives

김 정 하(Jung-Ha Kim)*

목 차

- | | |
|-------------------|-------------------------------|
| 1. 서론 | 3. 인권보호를 위하여 |
| 2. 민주주의의 좌절 | 3.1 드러나지 않은 세계 |
| 2.1 문서들의 비밀 | 3.2 부메랑 효과 |
| 2.2 비밀의 존재에 대한 부정 | 3.3 보존인가, 파괴인가, 진실인가
화해인가? |
| 2.3 세심하게 계획된 무질서 | |
| 2.4 파괴, 위조, 생략 | 4. 결론 |

<초 록>

역사적으로 권력과 기록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록물은 권력행위의 기록된 흔적이며 권력의 의지는 기록물의 존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자신의 행위를 증거하는 기록물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며 동시에 자신의 투명성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권력은 국민을 탄압하고 불행으로 이끈다. 이처럼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록물의 상징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관리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직결된다.

주제어: 원질서, 부메랑 효과, 역사기록물, 민주주의와 기록물, 권력과 기록물, 화해와 진실

<ABSTRACT>

Historically the relation between the power and archives is inseparable. Archives are the recorded traces of political actions and an intention of power has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existence of archives. In the democratic society the power serves people on the basis of the archives adopted as an evidence of political actions. Archives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balance of power, which is a principle point of democracy. Considering the function and symbolism of archives, its proper and reasonable management is connected directly to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s.

Keywords: original order, boomerang effect, historical archives, democracy and archives, balance of power, reconciliation and the true

*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연구교수(kimbriss@empas.com)

■ 접수일자 2009년 11월 18일 ■ 수정일자 2009년 12월 11일 ■ 게재확정일자 2009년 12월 16일

1. 서론

역사기록물(Historical archives)은 생산기관의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된 후에 선별과정을 거치면서도 원질서(Original Order)를 유지한 채 영구 보존이 결정된 문서들 전체이다. 이들은 좁게는 생산기관의 모든 업무-행정적인 활동에 관한 흔적을, 넓게는 생산기관의 정체성 일부를 폭넓게 대변한다. 따라서 기록물과 생산기관(또는 출처)의 관계는 개인에서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증거들의 전체이며 동시에 각 실체가 표방하는 유기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으로부터 체제 전반에 이르는 정신-물질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관계인 것이다.

기록물과 권력의 관계는 이미 고대부터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되고 있다. 전자가 후자의 모든 움직임과 변화의 기록된 흔적이라면, 같은 맥락에서 후자의 의지는 기록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서로의 서로에 대한 역할과 상징 그리고 가치와 의미에 영향을 주는 관계는 민주주의 국가나 새로이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한 국가의 지배체제와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주로 살펴보게 될 정보기관이나 비밀기관의 기록물은 공인된 비밀의 영역에 머물 때와 은폐된 비밀로 유지될 때 권력의 정체성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 생산기관의 직-간접적인 대상인 시민들의 인권에도 보호와 탄압(또는 유린)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그럼 기록물이 생산주체와의 관계에서 드러내는 이중적인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역할의 마지막 여정에서 -특히 민주주의로의 체제변화를 경험한 국가들이 과

거정권하에서 생산한 - 기록물의 가치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지만 때로는 화합과 화해를 위해 희생되었다. 또한 보존은 기록물 관리에 있어 근본이지만 때로는 이들을 파괴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을 얻는다. 이러한 논리는 인간의 삶과 경험에 근거하는 진실을 상대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끌어내리려는 궤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진실의 절대적 가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활용하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국가와 같은 생산주체의 의지가 드러내는 상대적인 의미를 지적한 것이다.

기록물의 역사-문화적 가치는 관련업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회에 환원된 가치이다. 또한 문서들은 이러한 합법적인 '가치의 사회 환원'이외에도 소위 말하는 '문서들의 장막' 속에서 은밀한 목적을 위해 생산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가 암시하듯이, 기록물은 권력의 상징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에도 결정적이다. 기록물은 적어도 초기에는 생산기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만 영구보존의 단계에서는 지역사회는 물론, 생산기관들의 전체를 포함하는 국가와 국제사회에도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논리는 기록물을 인류를 위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관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2. 민주주의의 좌절

2.1 문서들의 비밀

고대제국에서 기록물은 항상 권력과 동반관

계에 있었다. 법 규정, 사회의 정보에 대한 필요성, 아키비스트의 부단한 노력 그리고 역사가와 시민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문서들을 둘러싼 장막은 완전히 투명해지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정권에서도 어둠의 그늘은 존재한다. 봄비오(Bobbio 1984, 84)는 이를 '민주정치의 실패'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록물의 자유롭고 충분한 활용으로 충족되어야 할 권리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급의 대상에는 현존하는 권력의 기록물외에도, 법의 영역 밖이나 법에 대치되는 상황에서 활동하는 조직들과 불법적인 활동을 자행하는 합법적인 부서들 그리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권력들에 의해 생산되고 축적된 문서들이 해당한다.

실질적으로나 또는 법적으로 은밀하게 활동하는 비밀조직이 자신이 생산한 문서, 정보, 결정 그리고 사건을, 제거하기가 쉬운 통신수단을 이용할 경우 쉽게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한다는 사실은 일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종종 중요한 결정은 구두나 직접적인 접촉, 코드나 암호 또는 조직원을 통해 전달되기도 한다. 하지만 문서들은 작성되어 수발신되며, 특별한 방식으로 또는 접근하기 힘든 장소에 보존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폭로의 수단이며 증거와 증언의 출처에 해당한다. 스테파노 비탈리(Stefano Vitali)가 지적한 것처럼, 서로 상이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맥락에서, 기록물은 존재 그 자체로 인해 은밀하게 감지되어 - 적어도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 - 미공개

의 상태로 남아있는 행위와 사실들을 밝혀내는 '위험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20세기에 비밀활동의 정보조직들이 관료제도로 발전한 과정은 - "현대의 기밀은 문서의 기밀이라고 할 정도로 기록하는 것에 집착하는(Dewerpe 1994, 142)" - 이들이 수행하는 문서생산의 기원에 해당한다. 지난 19세기말부터 유럽에는 일반경찰들 외에도 시민의 '공적인 사고'를 통제하는 정치경찰과 군대 그리고 첩보의 분야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비밀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들은 양차대전 이전의 기간에는 전체주의 정권의 산물로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양대 정치 불력으로의 분열과 냉전의 결과로 그 수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드웨퍼(Dewerpe 1994, 119)에 따르면,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과는 무관한 행위와 - 정의상 공적인 - 은밀한 행정이라는 비정상적인 모델의 형성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탈리아 군정보기관인 SIFAR이다.¹⁾ 이 기구는 모든 군사조직을 총괄하는 단일조직으로 창설된 이후(1949), 크게 두 가지 활동, 즉 '공격'과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후자의 임무를 담당하는 'D 부서'(Ufficio D)는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군대경찰과 국내보안의 임무를 담당하였고, 두 번째는 진정한 의미의 방첩활동을 하였다. 이 기구는 비서국 이외에도 대서양조약기구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부서로 운영되었다. SIFAR가 창설되기 이전에 활동하던 정보기관의 기록물보존소는 1943년 9월 8일에 발생한 화재로 파괴되었다.

1) SIFAR(Servizio Informazioni Forze Armate)는 이탈리아 군대의 비밀조직으로 1949년부터는 군사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후 방첩활동이 1944년 로마에서 재개되었을 당시 각 지방행정수도에 남아 있었거나 화재당시에 간신히 화마를 피한 문서들 그리고 방첩활동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의해 기록된 '기억'에 근거하여 기록물보존소의 재설립에 관한 조치가 취해졌다. 'D 부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1944~1966) 목록과 장부 그리고 목차를 갖추고 각 섹션별로 정리된 264,000개의 파일을 확보하였다. 가장 많은 기록물 시리즈는 지난 50년대 말 이후의 첩보활동과 정치인, 관료, 정부인사, 종교인 그리고 유명 인사들의 공적이고 사적인 활동을 은밀하게 조사한 개인파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²⁾

불법적인 관행을 문서로 남기는 경향은, 다른 시대의 다른 역사적인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위들이 얼마나 은밀하게 추진되었는가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였다. 유럽 레지스탕스의 정치·군사조직들은 저항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위험은 물론, 문서들을 빼앗기고 발각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기밀문건, 통신문, 인쇄물을 제작하고 발송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 레지스탕스는 '가장 왕성한 문서 폭식가'라고 할 수 있었다(Noguères 1984, 26). 다른 하나의 사례는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Brigate rosse)이다. 공권력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록물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아드리아노 소프리(Adriano Sofri)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붉은 여단은 테러활동을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문서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해

야 할 정도로 문서생산에 세심하였다. 국가비밀기관들의 경우처럼, 붉은 여단의 기록물은 온전히 남아 있었다. 알도 모로(Aldo Moro) 수상의 납치, 살해에 관한 문서들이 안전을 이유로 파괴되었다는 것은 당시 이러한 붉은 여단의 생리상 도저히 믿기 힘든 사실이다. 모든 단체나 조직은 자신이 생산한 문서들에 강한 애착을 가진다(Sofri 1991, 88).

2.2 비밀의 존재에 대한 부정

문서들의 존재를 은폐하는 전략은 다양하다. 이러한 전략들 중에 비밀을 합법화하는 것은 이것이 그 대상과 시기와 절차 등에 있어 명백히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합법적인 비밀은 때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불확실할 정도로 그리고 - 행위와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쉽게 밝힐 수 없게 만드는 - 독단과 자유재량의 영역을 형성할 정도로 지극히 가변적이다(Pisa 1978, 26). 투명하지 못한 비밀의 경우, 은폐로 인한 위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비밀이 무책임한 형태를 갖추고 통제에서 벗어날 때 더욱 증폭된다. 그러므로 법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비밀로 분류된 공식적인 비밀은 말 그대로의 비밀과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는 장막을 설치하여 진실 확인을 방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밀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반니 살비(Giovanni Salvi 1988, 1050)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비밀

2) 'D 부서'의 기록물보존소에 대한 정보는 지난 196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문서를 비밀로 분류하여 자유열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문서의 공개를 지나치게 주장한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이것은 비밀이 구체적인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속임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일종의 확인절차이다. 이에 대해 드웨퍼(Dewerpe 1994, 141-142)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밀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이를 확인하는 직인이 없거나 또는 완전히 공개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 정치비밀, 관료정치상의 비밀은 은폐의 논리를 벗어나 그 존재가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 재판기록물의 특징은 이상의 언급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대상은 이탈리아의 글라디오(Gladio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와 이탈리아가 비밀로 합의한 불법조직이었으며 소비에트가 서유럽을 침공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에서 찾을 수 있다. 글라디오의 - 이탈리아군정보기관인 SISMI의 제 7분과 문서들 사이에서 발견된 - 문서들은 이 조직이 이탈리아와 미국이 체결한 비밀협약에 근거한 활동을 통해 생산된 순간부터 최고의 기밀로 분류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최고위급의 몇 사람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조직은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기록물관리와 역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조반니 살비는 재판에서 각각의 문서뿐만 아니라 문서들 전체, 즉 기록물이 조직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해 질서에도 증거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였다.

사람들은 글라디오의 문서들이 조직내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극비문서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에 상당히 느슨하고 자유롭게 관리되는 일반문서들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비밀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비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Giovanni Salvi 1988, 1050).

같은 내용은 칠레의 비밀경찰조직인 DINAMIA (Dirección Nacional de Inteligencia,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독재기간에 조직되었다)의 기록물에서도 볼 수 있다. 1978년 칠레와의 심각한 정치위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가 입수한 DINAMIA의 기록물은 군사독재정권이 종식된 후에 아르헨티나 정부에 의해 - 진행 중인 몇 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 이탈리아로 보내졌는데, 이를 계기로 당시 관련문서들이 ‘비밀문건 취급에 관한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3 세심하게 계획된 무질서

구체적이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질서가 없고, 규칙과 접근수단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 이러한 표현은 불법적인 기록물을 설명할 때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하지만 무질서가 항상 불법과 은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다. 이처럼 합법적인 비밀이 불법적인 활동의 은폐를 필연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이, 문서들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불법적인 문서들의 존재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근무태만과 최악의 행정 그리고 문화적인 인식의 부족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무질서는 통제를 무력화시키고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숨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기록물의 무질서는 “파리가 시체에 꼬이듯이 부패를 따라 다닌다(McKemish & Acland 1998).” 그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세기 90년대 초반 호주정부의 로스 켈리(Ros Kelly)가 관련된 스포츠 로트(Sports Rorts) 스캔들에서 찾을 수 있다(McKinnon 1994, 4).

국가의 조직과 정보기관의 탈선이 이탈리아에서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것은 무질서와 기록물관리규정의 부재였다. SIFAR에 관한 베올키니(Beolchini)의 보고서(1967)는 여러 번에 걸쳐,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문서들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사실, 비서실의 근무자면 누구든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부서 책임자의 이름으로 파일들을 다룰 수 있었던 문서관리시스템, 무질서한 기록물 관리 그리고 모든 파일을 대상으로 작성된 목차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³⁾ 이러한 내용은 지난 1994년 주체페 데 루티스(Giuseppe De Lutiis)에 의해 다시금 지적되었는데, 그는 글라디오와 관련하여 극비로 분류된 문서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른 문서들과 섞여있었던 사실에 개탄하였다. 1999년의 한 조사보고서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원칙적으로는 주요문건들에 첨부되어 있어야만 했지만 그 일부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 결과 이들을 주요문건들에 다시 첨부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특히 이들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를 밝히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활동을 증거하는 문서들 중에는 - 비록 원본으로 추정되는 파일들 속에 있었지만 - 보고서나 다른 미등록 문서들도 함께 발견되었다. 또한 ‘보존용’과 ‘폐기용’ 서류철도 발견되었는데, 문서들은 지금까지도 그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⁴⁾

당시 이탈리아 기록물관리자문회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몰수되기 이전에 이미 원질서가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서들의 맥락을 파악할 수도 없었고 답변의 진실성에 대한 평가와 문서에 대한 연구는 물론, 사라진 나머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의미 있는 지적과 다른 중요한 ‘심증들’에 입각하여, 기록물관리는 그 자체로(개입, 무질서, 함정, 결핍), 글라디오(Gladio)에 대한 사법재판에서 피고들에 대한 고발의 근거로 채택되었다.

비밀기관들의 불법적인 행위나 은폐로 인한 기록물의 무질서를 보여주는 다른 사례는 국가의 정보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비밀을 위한 의회위원회(Comitato parlamentare per i servizi di informazione e sicurezza e per il segreto di Stato)가 발행한 ‘1995년 정보 및 보안시스템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Primo rapporto sul sistema di informazione e sicurezza del 1995)

3) *Dossier Sifar*, cit., 28-29.

4) *Requisitorie conclusive del pm G. Salvi nel procedimento a carico di Martini Fulvio e altri(cd Gladio)*, 1999, 6.

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폰타나 광장의 참사에 관한 문서조작, 보르게세(Borghese) 쿠데타 당시의 대화를 녹음한 마그네틱 저장 장치 분실, 지난 세기 70년대의 긴장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아우구스토 카우키(Augusto Cauchi)에 관한 문서들의 분실, 페코렐리(Pecorelli)의 문서들 중에서 기밀문건들이 분실된 사건이 그것이다.⁵⁾

이처럼 의회위원회는 기록물 관리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문서들은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제가능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을 이용하여 일단의 지도 그룹이 비밀문서들을 사실상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이것은 정보활동의 변질과 수단화를 가능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다. 의회위원회는 조사를 마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잠정적인 결론으로 채택하였다.

논리적인 맥락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관계직원의 무관심, 어리석음 그리고 근무태만으로 인해 무질서가 야기되었다는 가정과 혼란을 조장하고 은폐하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가정이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가정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확실하다.

‘계획된 무질서’를 조장하는 방법들 중의 하

나는 데 루티스(De Lutiis)의 말처럼, 사안에 민감한 문서들을 다른 파일로 옮겨놓거나 또는 일반문서나 별로 의미가 없는 문서들과 함께 놓아두거나(De Lutiis 1996, 152), 폐기할 수 있거나(Theoharis 1998, 10), 필요에 따라 제거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관리하는 미등록문서들과 함께 놓아두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 방식은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마로니(Maroni)에 의해 ‘적당한 순간에 이 파일에서 저 파일로 옮겨지는 정보와 파일들의 표류’로 묘사되었다.⁶⁾ 조사위원들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보장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른바 ‘비정상적인’ 정보가 민주정보안전부(SisDE: Servizio per le Informazioni e la Sicurezza Democratica) 기록물보존소의 아킬레(Achille) 파일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1996~1997년에 실시된 의회의 조사에서는 파일속에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몇 장의 문서가 빠져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⁷⁾

2.4 파괴, 위조, 생략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계획된 무질서 외에, 파괴와 생략 그리고 문서위조도 함께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이란 게이트(Iran-Contras) 청문회가 열리던 기간에 노스(North)와 포인덱스터(Poindexter)는 약 6,000개의 이메일을 삭제하였다. 당시 비공개 증인들은 문

5) Camera dei deputati, Senato della Repubblica, XII legislatura, Comitato parlamentare per i servizi di informazione e sicurezza e per il segreto di Stato, *Primo rapporto sul sistema di informazione e sicurezza*, cit.
 6) Comitato parlamentare per i servizi di informazione e sicurezza e per il segreto di Stato, *Primo rapporto sul sistema di informazione e sicurezza*, cit.,; G. De Luttis, *Il lato oscuro del potere*, associazioni politiche e strutture paramilitari segrete dal 1946 a oggi, Roma: Editori Riuniti 1996, cit.
 7) <http://www.camera.it/_bicamerale/sis> [cited 2009.9.1].

서 폐기가 다른 경우들에 비해 분명히 비정상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문서 파괴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청문회는 백악관의 고위관료들이 직접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복구된 이메일을 통해 이란과 니카라과 사태에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었고 아울러 두 사건의 연관성도 사실로 밝혀졌다. 이러한 성과는 문서파괴를 지시한 책임자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문서들 덕분이었다. 이것은 모든 작업과 부당한 개입의 흔적이 남도록 프로그램 된 정보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⁸⁾ 다른 사례에서는 모두 파악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밝혀진 문서화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작전을 승인한 레이건 전(前) 대통령의 문건은 NSC의 부서에서 파괴되었다(이 문건은 국가안보회의의 NSC 소속이었지만 이후 CIA에서 그 사본이 발견되었다, Wallace 2002, 101).

보통, 고의적인 파괴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다. 베네치아 카손(Venezia Cason) 법원의 수석판사가 - 당시 이탈리아 의회의 의

장이었던 줄리오 안드레오티(G. Andreotti)가 비밀군사조직의 존재에 관해 연설한 내용을 포함하여 - 글라디오(Gladio)에 관한 문서들을 열람하기 위해 SISMI의 제 7분과의 기록물보존소에 열람을 신청한 직후인 1990년 7월 29일과 8월 8일 사이에 - 관련 등록 장부를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된 - 상당량의 문서가 파괴되었다.⁹⁾ 사건들의 은폐를 위한 고의적인 파괴는 현용문서들의(정보) 열람에 관한 국내규정에 근거하여 이해당사자들이 문서열람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발생하였다(Gilbert 2000, 113).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혈액조사위원회(Canadian Blood Committee)¹⁰⁾와 지난 세기 90년대 중반 캐나다 군대가 소말리아에서 저지른 만행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을 당시 관련문서들은 정보접근법(Access to Information)에 따라 열람신청서가 제출된 후에 파괴되었다.¹¹⁾

기록물 은폐는 문서가 작성되는 단계와 필사과정에서도 발생하였다. 우주항공국 나사(NASA)는 문서들이 정보자유헌장(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근거하여 열람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989년 Suggestions for anticipating requests under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는 제목의 정

8) 복구된 e-mail 이외에도 PROFS 프로그램과 의회청문회에 제출되어야만 하였던 6개의 중요한 문서를 찾을 수 있게 해준 정보시스템의 덕분이었다(Wallace 2002, 104).

9) Comitato parlamentare per i servizi di informazione e sicurezza e per il segreto di Stato, *Primo rapporto sul sistema di informazione e sicurezza*, cit.: G. De Luttis, *Il lato oscuro del potere*, cit., 137.

10) 지난 세기 80년대에 캐나다에서는 AIDS 바이러스의 전염과 epatite C의 확산으로 야기된 보건참사가 발생하였다. 인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이 참사와 관련하여 사법재판이 수년간 진행되었으며 그 와중에서 정치적 변화와 여론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스캔들의 원인으로는 행정가들과 혈액공급을 위한 캐나다 시스템이 지적되었다. 이후 전개된 청문회들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들 중에는 -결정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캐나다 혈액위원회의 주요문서들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11) Cfr. <http://www.forces.gc.ca/site/Reports/somalia.VOLO/VOS21_e.asp> [cited 2009.8.14].

관(memo)을 제정하였다. 내용 중에는 최종문건을 초안문서처럼 보이게 하고 통신문, Memorandum을 포함한('정부 내에서 솔직하고 충분하게 논의된' 사안들의 등록을 비밀로 보장하기 위해 최종결정에 앞서 작성되는) 모든 문서들을 기밀 해제 절차로부터 제외시키기 위해, 문서들을 비공식적인 형태로 작성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¹²⁾

자동검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서들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기술은 정보부의 여러 부서들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관들의 경우, 회의록에는 모든 절차가 생략된 채 일반적인 내용만이 언급되었을 뿐이다(Theoharis 1998, 10). 끝으로 고문서학적인 관점에서는 진본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짓된 문서들이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작성되었는데[당시에 이 문서들은 탄질리 정보(informativa Tanzilli)로 불렸다], 당시 방첩기관의 책임자는 폰타나(Fontana) 광장의 참사에 대한 몇 가지 증거의 정치적 의미를 왜곡하여 조사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극좌익세력의 짓으로 몰아가기 위한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¹³⁾

3. 인권보호를 위하여

3.1 드러나지 않은 세계

시민과 민중의 권리, 인권과 인류보편의 권

리, 즉 기록물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기대감과 요구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사를 규정하는 '권리들이 수적으로 증가하는 과정(Costa 2005, 115)'에 따라 발전하고 구체화되었으며,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근대시민권의 특징과 경계를 설정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여정은 각 국가의 인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세계시민의 인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들 간의 권리에 근거하는 각국의 권리로부터 국제적인 권리로 진행되었다.¹⁴⁾ 지난 세기 20년대와 30년대 전체주의 국가들의 경험, (유대인)대 학살(Shoah) 그리고 지난 제 2차 세계대전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붕괴는, 인간의 양심을 공격하는 야만적인 행위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련된 세계인권선언(1948, Dichiarazione universale dei diritti umani)과 더불어, 개인을 국가, 영토, 소속국가와는 무관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들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민과 국가의 관계는 '소속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확대될 때부터 그리고 다양한 영향권의 정치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느슨해지고 복잡해져 갔다(Costa 2005, 149).

지난 세기 90년대는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반(反)하는 사례가 지극히 많았던 기간이었다.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고, 남미의 독재정권들이 몰락하였으며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이 종식된 이 기간에 기록물은 민중 모두에게 역사

12) NASA의 메모에 대해서는 Wiener(1998, 10) 참조.

13) Comitato parlamentare per i servizi di informazione e sicurezza e per il segreto di Stato, *Primo rapporto sul sistema di informazione e sicurezza*, cit.

14) 세계인권선언(*Dichiarazione universale dei diritti umani*)의 서문.

와 기억을 반환하여 모든 시민이 그동안 빼앗겼던 것을 보상받을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진실을 회복하고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기록물에 의존하는 것은 이 기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이후에도 기록물보존소는 자신의 활동과 행위, 중단되었던 경력, 빼앗겼던 재산과 소유권을 증명해 줄 문서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몇 가지 사례로, 지난 세기 50년대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이탈리아 퇴역군인들, 공산정권이 종식된 후 매년 25,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부동산 재산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물보존소로 몰려든 알바니아 시민들을 지적할 수 있다.¹⁵⁾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20세기말의 새로운 변화는 기록물이 각 개인의 요구가 민중 전체의 명분과 일치하였던 집단운동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아울러 개인이 기록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회적인 요구의 차원으로 격상되었다. 다시 말해 기록물의 행정적 활용은 이를 민주주의 탄생의 근본으로 그리고 인권 성립의 근거로 간주하는 정치적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3.2 부메랑 효과

과거 정권들의 기록물은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복합적인 과정에서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였다: 기록물은

“무기력하지만 활력을 잃은 것이 아니며, 물리적인 거리감은 없지만 기억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닫혀있지만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Block 2005)” 사람들은 실종된 친인척에 대한 소식을 위해, 비밀기관들이 수집해 놓은 자신들의 삶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신념이 탄압받았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특사(特使)를 기대하기 위해, 피해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몰수당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 기록물보존소를 방문하였다. 사실상 민중 전체가 진실을 알고 반인류적인 범죄의 책임자들을 색출하며 기록된 기억의 전체를 알고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였던 것이다(Quintana 1998, 7-17).

이 과정에서 통제임무를 수행하고 정권에 저항하는 개인과 집단을 탄압하였던 기관들이 생산하고 수신하고 수집한 문서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탄압주체의 기록물보존소에는 - 비민주적인 국가의 행위와 제도에 관한 비밀과 관료주의적인 경찰조직의 결함에 따른 근본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 ‘문서에 대한 집착’과 ‘세밀한 내용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세세하게 기록되고 기술된 문서들이 보존되어 있었다.¹⁶⁾

독재정권들에서는 - 푸코에 의하면 - 지난 18세기에 이미 조직을 갖춘 정치권력의 사회통제 기능과 ‘경찰의 전지전능한 소명’이 확산되어 있었다.

15) Cfr. <<http://www.sdc.admin.ch/index.php?navID=65105&langID=7&>> [cited 2009.8.18].

16) 동유럽 국가들의 경찰조직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활동에 종사한 사람들의 수는 루마니아 25,000명, 체코슬로바키아 20,000명, DDR 90,000명, 불가리아 6,000~9,000명, 헝가리 2,000명이었다(Fugueras & Cruz Mundet 2002, 59).

이러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항구적이고 어디든 존재하며 모든 것을 들춰내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능력을 갖춘 감시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일련의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지난 18세기에 경찰이 축적한 엄청난 양의 문서들은 - 활동의 과정에서 그 흔적이 문서들에 자연스럽게 반영된 - 거대한 조직들을 통해 사회전체를 통제하였다. 사법과 행정의 문서생산과는 달리, 경찰의 기록물은 개인의 행동과 습관, 의심내용 등에 관한 것이었다(Foucault 1976, 223).

지난 20세기의 독재국가들에서 '문서들의 장막'(telón de papeles)은 은밀한 작전과 탄압을 주도한 집단의 무책임함과 조직적으로 획책된 공포의 덕분으로, 거대한 기록물 더미, 즉 효율적으로 조직되어 탄압에 동원된 강력한 기록물 머신이 되었다. 통제와 감시의 능력을 상징하는 관리기술은 무시하더라도, 탄압에 앞장선 기관들이 생산한 기록물의 문서유형을 살펴보면 이미 종료된 작전들에 관한 문서들이 과거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문서파일들에는 반정부운동과 조직 그리고 구성원들의 서명이 있었으며, 목록에는 원하는 문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자료들로부터 추출된 모든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었던 것은 물론, 몰수된 기록물과 문서들에 대한 목록도 함께 남아 있었다.

정보기관과 안보기관, 군사조직, 특별법정, 수용소와 감옥, 재교육 기관, 일반 및 특수경찰

과 같은 기관들의 기록물은 '공포의 기록물'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다. 일반적으로, '공포의 기록물'은 출처와 성격이 다양한 문서들, 예를 들면 저항운동과 그 주역들 그리고 진실위원회와 인권조직들이 생산하였거나 수집한 문서들을 포함하는 가장 방대한 문서들을 의미한다. 박해와 인권침해 그리고 저항운동에 관한 모든 증언은 역사기억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적인 성격을 내포한다.¹⁷⁾ 이들은 과거 생산과정에서 독재 권력의 활동을 부추기고 잔인함과 권력남용을 보장하였으며 살인과 고문을 허가했던 기록물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물질적 보상(상속, 동산 및 부동산 반환, 정치적 복권, 특사, 은폐된 정체성 회복 등), 책임자 색출, 폭력 고발 그리고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획득한다. 이것은 탄압의 기록물이 해방을 위한 기록물로 그 역할과 의미가 뒤바뀌는 부메랑 효과이다.

이러한 기록물의 중요성은 이들을 찾아내서 보존해야 할 필요성 외에도 생산당시의 맥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재정리해야 할 기록물 관리기관에게도 여전하다. 조지 시가스(George Chigas)는 자신의 저서에서, 폴 포트 정권의 독재 하에서 크메르 루즈(Khmer Rossi)가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서들의 역사 특히, 생산조직이 자신의 기록물을 - 누가 언제 그리고 어디에 있었는가와 관련하여 -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문서들이 역사연구의 원천이며 합법적인 증거로서의 신

17) 'Nunca más'는 아르헨티나 군사정권(1976~1983)이 붕괴된 후에 독재정권의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인 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를 위해 에르네스토 사바토(Ernesto Sábato)가 쓴 저술(1986)의 제목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Nunca más'는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조직들의 슬로건이 되었다.

되성을 가지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Chigas 2000, 1).

기록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끔찍한 진실을 확인하거나 책임자 색출을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 불가능하였을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서는 프놈펜 투어슬랭(Toul Sleng)과 비밀경찰 썬테발(Santebal)의 문서들이 재발견되어 1975~1979년 사이에 170만 캄보디아인이 학살되었다는 소문이 - 강요된 자백, 고문, 박해, 투옥된 자들의 개인정보, 사진, 처형명령서 등을 통해 - 사실로 밝혀졌다.¹⁸⁾ 기록물을 되찾음으로써 캄보디아의 대량학살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국제재판소의 활동이 가능하였고 그 결과 2006년 7월 프놈펜의 실버 파고다 궁에서는 30명의 판사들(캄보디아인 17명, 외국인 13명)이 두 명의 스님 앞에서 서약한 후에 재판의 시작을 선언할 수 있었다.

파라과이에서는 1992년 평화노벨상 수상자인 마르틴 알마다(Martín Almada)가 그 동안 비밀에 싸여있던 비밀경찰조직 아순치온(Asunción)의 기록물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2003년 10월에 ‘진실과 정의를 위한 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였다. 당시 발견된 기록물은 스트로에스너(Stroessner)의 군사정부(1954~1989)가 반대파를 숙청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한 문서들이었다. 당시 발견된 기록물에는 박해와 고문의 희생자들에 대한 상세한 신상정보, 사진, 자백서, 재산몰수 등에 관한 시청각 자료, 공식 명령서와 통신문, 탄압기구의 책임자들, 정보원

과 고문가해자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물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조직인 오페라씨온 콘도르(Operación Condor)의 활동을 사실로 증명해주는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¹⁹⁾

이와는 달리, 원본기록물이 없으므로 해서 진실규명이 불가능했거나 또는 기대할 수 없게 된 사례도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0~1994년 사이에, - 아프리카스어로 ‘분리’를 의미하며 소수 백인과 다수 유색인종의 관계를 지배했던 인종차별정책을 상징하는 -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정부가 인종차별 정권의 탄압활동을 주도하였던 조직들의 수많은 문서들에 대한 조직적인 파괴를 허용하였다(Harris 2002). 이로 인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정책에 저항했던 투쟁과 투쟁조직에 관한 모든 기억도 함께 사라졌다. 그 결과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인권침해에 관한 다양한 조사는 난관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은 이러한 파괴의 결과에 통감하였다.”²⁰⁾ 사실상 과거 죽음을 무릅써야만 했던 공포와 협박 그리고 탄압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던 행위들에 이어, 이번에는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를 다른 어떤 선택의 자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받았던 것이다.

기록물을 되찾아 재활용하는데 있어 -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또는 조직과 운동세력들의 압력 하에서 또는 협상과 정치적 타협

18) <<http://www.yale.edu/cgp/cgpdb/cgdbmain.htm>> [cited 2009.8.15].

19) A. Ammetto, *Gli artigli del Condor sul Paraguay*, 2005.12.22.

<<http://www.zmag.org/italy/ammetto-artigliisulparaguay.htm>> [cited 2009.8.14].

20)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최종보고서(cap. 기억의 파괴 참조): <http://www.dojgov.za/trc/trc_framset> [cited 2009.8.14].

으로 실현된 - 진실위원회는 과거를 청산하는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던 반면, 보상과 용서 그리고 처벌에 관한 권한은 정치권과 사법권이 행사하였다.²¹⁾

진실위원회는 정치폭력이나 내란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경험한(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회를 돕기 위해 조직된 조사기관으로서, 이러한 비극이 가까운 미래에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고 폭력과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목적에 따라 자신의 과거를 비평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조치이다. 진실위원회는 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쟁의 요인을 밝혀내며, 인권침해의 심각한 행위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진실위원회는 공포를 주도한 조직들과 사회의 여러 분야에 남겨진 흔적들(군대, 경찰, 사법권력, 교회 등)이외에도 이러한 혼란에 휘말린 다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 이러한 조사를 통해 드러난 희생자들에게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을 제안하며 인권을 유린한 자들이 입헌국가의 명분에 숨어 공적인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된다.²²⁾

비록 사법적 처벌을 위한 강제권을 갖지는 못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위원회(1995)는 투투(Tutu) 대주교의 지휘 하에, 주로 희생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면서 그리고 탄압

의 가해자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가능한 많은 진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였다(Flores 1999, 45-53). 이러한 상징적인 맥락에서 기록물은 수집된 증거로서의 역할과 의미외에도, 집단의식과 - 범법자와 죄인을 색출하는 활동의 범위를 넘어, 공존과 인권의 모델을 구축하는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는 - 일종의 사회적 자아인식을 반영한다.

3.3 보존인가 파괴인가, 진실인가 화해인가?

비자유주의 정권의 문서들을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보존할 것인가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여러 개의 대답이 가능하다. 첫째는 거의 전부를 보존하는 것이고, 둘째는 거의 전부를 파괴하는 것이며, 셋째는 행정적 활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존하였다가 불법적인 활용을 예방할 목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과거 독일은 첫 번째 길을 선택하였다. 결정에 대한 반대와 반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보존을 지지하였다(Zelinski, & Radtke 1992, 34).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얼마동안 독일시민은 동독의 국가안전부(STASI: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의 본부와 지방의 여러 지부를 강점하고 - 베를린 붕괴 직후부터 문서들을 소각하거나 파괴하는 작업을 시작한 - 비밀요원들이 더 이상 파괴

21) Cfr. M. Flores(감수), *Verità senza vendetta*, cit., 11-14; 피지(Fiji), 가나(Ghana), 과테말라(Guatemala), 라이베리아(Liberia), 모로코(Marocco), 파나마(Panama), 페루(Perú), 시에라리온(Sierra Leone), 동티모르(East Timor), 차드(Chad), 에콰아도르(Ecuador), 타이티(Haiti), 네팔(Nepal), 나이지리아(Nigeria),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Serbia e Montenegro), 한국(Sud Corea), 스리랑카(Sri Lanka), 짐바브웨(Zimbabwe)의 경우 <<http://www.truthcommission.org>> [cited 2009.8.14].

22) <<http://www.derechos.org/koaga.iii/1/cuya.html#con>> [cited 2009.9.1]. 이 사이트에서는 칠레,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페루, 파라과이, 볼리비아, 브라질에서 있었던 진실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들을 은폐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을 중단시켰다.²³⁾ 당시 독일시민은 ‘나의 행동에 자유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기록물을 정의의 이름으로 과거를 재방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였으며(기록물은 과거청산과 보상을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다), ‘양심의 해방을 위해’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정치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시민운동의 방향은 과거 독일이 나치정권과 노림베르가 재판 당시의 문서들에 대해 취했던 공식적인 태도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연합군의 중재를 대신하여, 독일시민이 자신의 기억을 활용하는 주체이며 운명의 절대적인 대변자였다는 것이었다. 1991년 12월 연방정부가 구성되었을 당시 국가안전부의 문서들에 대한 보존과 활용은²⁴⁾ 분쟁당사자들의 타협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반면, 두 번째 해결책을 선택한 칠레에서는 문서들이 대규모로 파괴되었으며, 이 때문에 피노체트 정권의 통치기간에 자행된 범죄의 주동자들을 색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1990년에 조직된 ‘진실화해위원회’(Commissione per la verità e riconciliazione)는 주로 구술증언이나 기록된 기억을 주로 활용하였는데, 사실 이들은 탄압의 책임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문서적 근거로 간주될 수 없었다(Quintana 1998, 11).

세 번째 해결책은 그리스의 선택이었다. 이

나라는 주요 책임자들을 색출하여 감옥에 보낼 목적으로 기록물을 활용한 후에, 독재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차단하고 미래에 재기될 수도 있을 손해배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록물의 파괴를 승인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Quintana 1998, 11-12).

결과적으로 위의 세 가지 해결책은 독재정권으로부터 민주정권으로의 전환을 가져온 여러 정치적인 변화와 관련을 맺고 있다. 키타나(Quintana)에 따르면, “탄압정권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관련기록물의 미래를 결정한다.” 만약 정권교체가 독재정권의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 신·구 지도세력들 간의 협상으로 실현된 것이라면, 사회적 평화와 국민적 화해의 명분이 개인들의 요구(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보다 집중될 것이며 책임자 색출과 처벌은 관련법의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문서들의 파괴나 열람금지를 주장하는 명분이 우세하다면 그 이유는 기존의 관료정치세력 그리고 지도계층이 이를 크게 선호하기 때문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는 남아프리카와 스페인의 경우이다. 정권이 혁명이나 체제붕괴로 교체된 경우에 진실과 정의에 대한 요구는 손해배상에 대한 그것에 비해 더 큰 공감대를 얻게 된다. 게다가 제도와 정치의 급진적인 변화는 과거의 기록물에 접근하고 보존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때 기록물은 정치적

23) STASI의 요원들이 파괴하려고 했던 문서들의 일부는 오늘날 노림베르가(Norimberga)에 보존되어 있다. 당시 문서들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은 이들을 재구성하는데 37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Cfr. A. Funder, *C'era una volta la DDR*, Milano: Feltrinelli 2005.

24) G. Haendly, “L’Autorità federale responsabile per la documentazione della STASI(Sicurezza dello Stato) della ex Repubblica democratica tedesca,” *Per aspera ad veritatem*, 1998, 11, *Gnosis on line. Rivista italiana di intelligence*, <<http://www.sisde.it/sito/Rivista11.nsf/sernavig/7>> [cited 2009.8.15].

인 분쟁과 협상의 여지이며 그 결과는 문서들의 상태(문서들의 존재여부, 접근의 한계 등), 시민권의 한계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권침해의 사례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국민국가와 기록물의 관계이다. 또한 인권보호를 전제로 기록물이 겪는 변화와 가치를 분석할 경우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국제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인권은 그 정의상 세계보편적인 것이며, 법학연구자들의 말을 빌리면, 관련법을 제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제 진실에 대한 권리는 국가의 법규정차원에서 벗어나 국제차원의 보호대상으로 간주되는 인간의 기본법으로 격상되며, 세계보편의 세계로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상위의 차원으로 옮겨간다.²⁵⁾

만약 기록물이 회복을 위한 증거, 집단기억을 위한 필수요인, 권리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화해와 보편적인 정의(正義)의 근거라고 한다면,²⁶⁾ 인류의 문화유산인 기록물을 보존하는 임무는 국가차원에 국한되거나 각 국가의 이해관계로 제한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침해에 대한 기억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기록물의 경우 이들을 보호하는 조

치에 대한 관심은 국가의 범위를 초월하며 국제법 차원으로 승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Quintana 2004, 63-64).

기록물을 보편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과 국가와의 오리지널적인 관계가 급진적으로 해체되는 것은 다른 영역들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국가의 차원을 초월하는 윤리규정과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른 한 편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영구)기록물관리기관들을 독립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물론 두 경우 모두에 있어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관련주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 결코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결 론

역사를 통해 드러난 기록물관리의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들이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로 그리고 불법적인 용도로 생산, 활용된 후에도 '문서들의 장막'에 휩싸인 채, 그 존재가 부정된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생산주체는 제도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기관들

25) D. Nocilla, "Il diritto alla verità nell'età della globalizzazione." http://www.comunicazione.uniroma.it/dirittocostituzionale/verità_globalizzazione.doc, 6; cfr. Bobbio, *Le età del diritto*, cit., 23 sgg.; A cassese, *I diritti umani nel mondo contemporaneo*, Laterza, Roma-Bari 1994, 51sgg.

26) J. Boel, *Archives and Human Rights*, V World Social Forum, Porto Alegre(2005년 1월 30일)의 보고서. 인용된 내용은 CITRA(Conference of the Round Table on ARchives)에 의해 채택되었다. <http://www.ica.org> [cited 2009.8.17].

이었으며 생산된 기록물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역사적 흔적에 해당한다.

지난 19세기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광기와 이로 인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하였다. 그 와중에서 정치경찰과 첩보기관과 같은 비밀조직들은 은밀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공적인 사고'까지도 감찰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비단 비민주주의 국가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과거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투명성이나 책임성과는 무관하게 생산되고 활용된 기록물의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오늘날 유럽에 이러한 불법 기록물이 적지 않게 남아 있는 이유는 미처 파괴하지 못한 사정도 있었지만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이들이 가능한 매우 은밀하게 추진되어야만 했던 불법적인 관행들에 대한 증거들이었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관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물을 가능한 영원히 비밀의 방에 묻어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 역사적으로 확인된 - 효과적인 방법들은 비밀을 비밀이 아닌 것처럼 관리하는 것, 비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존재와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결코 찾을 수 없도록 무질서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것, 다른 중요하지 않은 문서들과 섞거나 또는 보다 직접적으로 파괴, 위조, 생략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지난 20세기 말은 유럽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할 정도로 비민주주의 정권의 붕괴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소비에트의 붕괴, 남미독재정권들의 몰락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주의 종식 등이 민주주의로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이들이 탄압의 수단으로 생산한 수많은 비밀문서들의 덕분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는 빼앗긴 과거와 기억을 되돌려주고 고통에 대한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부메랑 효과는 - 과거 탄압정권들의 문서생산과 보존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배경으로 - 기록물이 민주주의로의 회귀, 즉 과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실위원회들의 활동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과거의 역사는 항상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니며, 꼭 그래야만 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한 과거를 망각 속에 묻는 것도, 방치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흔적을 파괴하는 것도 반드시 현명한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부끄럽거나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기록된 기억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존하는 것, 파괴하는 것 그리고 활용한 후에 더 이상의 사용을 막기 위해 파괴해버리는 것.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정치적인 선택으로서 부정과 긍정의 다양한 결과를 남기는 것은 물론 기록물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기록물은 인권을 신장하고 빼앗긴 인권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 변화된 역사 환경에서 과거 탄압의 수단으로 생산되었던 기록물에 대한 관리, 오늘날 인권이 더 이상 국가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가의 정치적인 차원과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국제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lock, D. 2005. Broadcast and Archive: Human Rights Documentation in the Early Digital Age. [cited 2009.8.11] <http://molodiez.org/dms420/hr_archives.htm>.
- Bobbio, N. 1984. *Il futuro della democrazia, una difesa delle regole del gioco*, Torino: Einaudi.
- Bobbio, N. 1990. *L'eta' dei diritti*, Torino: Einaudi.
- Brutti, M. "Disciplina degli archivi dei servizi e riforma del segreto di Stato." SISSCO, Segreti personali e segreti di Stato: 111-121.
- Chigas, G. 2000. Building a Case Against the Khmer Rouge: Evidence from the Tuol Sleng and Santebal Archives. *Harvard Asia Quarterly*, 4(1): 44-49.
- Costa, P. 2005. *Cittadinanza*, Roma-Bari: Laterza.
- De Felice, F. 1989. Doppia lealta' e doppio stato. *Studi storici*, XXX, 3: 493-563.
- De Lutiis, G. 1996. *Il lato oscuro del potere. Associazioni politiche e strutture paramilitari segrete dal 1946 a oggi*, Roma : Editori Riuniti.
- Dewerpe, A. 1994. *Espion*, Paris: Gallimard.
- Foucault, M. 1976. *Sorvegliare e punire. Nascita della prigione*, Torino: Einaudi.
- Fugueras, R. A., & J. R. Cruz Mundet, 2002. *Archivese! Los Dcumentos del poder. El poder de los documentos*, Madrid: Alianza Editorial, 59.
- Giannulli, A. 2005. *L'armadio della Repubblica*, Roma: Nuova Iniziativa Editoriale.
- Gilbert, J. 2000. Access Denied: the Access to Information Act and its effect on public records, *Archivaria*, 49: 84-117.
- Harris, V. 2002. They Should Have Destroyed More. The Destruction of Public Records by the South African State in the Final Years of Apartheid, 1990~1994, *Archives and the Public Good: Accountability and Records in Modern Society*, ed. Richard J. Cox, David A. Wallace, pp. 205-228.
- McDonald, L. 1998. *Legal Matters*, in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nterdependence of Archives. Proceedings of the Twenty Ninth, Thirtieth and Thirty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ound Table on Archives, XXIX Mexico.
- McKemmish, S. and Acland, G. 1998. Archivists at Risk: accountability and the role of the professional society" [cited 2009.8.11] <www.sims.monash.edu.au/research/rcrg/publications/archive1.html>.

- McKinnon, S. 1994. The Sports Rorts Affair : A Case Study in Recordkeeping, Accountability and Media Reporting. *New Zealand Archivist*, Vol.4: 1-5.
- Noguères, H. 1984. *La Vie quotidienne des résistants de l'armistice à la liberation*, Paris: Hachette, 26, cit., in A. Dewerpe, *Espion*. 142.
- Pisa, P. 1978. Le premesse 'sostanziali' della normativa sul segreto di Stato. M. Chiavario(a.c. di), *Segreto di Stato e giustizia penale*, Zanichelli, Bologna: 1-36.
- Quintana, A. G. 1998. Archives of the Security Services of Former Repressive Regimes, Report prepared for UNESCO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Archives. *Janus*, XVI, 2.
- Quintana, A. G. 2004. *Los archives de la represión: balance y perspectiva*, Comma, 2: 59-74.
- Salvi, G. 1998. Occulto e illegale. La gestione degli archivi e il controllo di legalita'." *Studi storici*, XXXIX: 1048-1057.
- Sofri, A. 1991. *L'ombra di Moro*, Palermo: Sellerio.
- Theoharis, A. G. 1998. *A Culture of Secrecy. The Government versus the people's Right to Know*,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Wallace, D. A. 2002. Impausible Deniability: The Politics of Documents in the Iran Contra Affair, *Archives and the Public Good: Accountability and Records in Modern Society*, ed. Richard J. Cox, David A. Wallace. pp. 91-114.
- Wiener, J. 1998. National Security and Freedom of Information: The John Lennon FBI Files, in *A Culture of Secrecy: The Government Versus the People's Right to Know*, ed. A. G. Theoharis,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Zelinski, B, and Radtke, A. 1992. La Mémoire unifiée? L'héritage équivoque des archives de la RDA. *Vin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cited 2009.8.17] <www.persee.fr>.